

##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-43호

#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·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 경비지원방법등에 관한 고시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, 제28조제3항, 제37조제2항, 제41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,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(별표17의2 제4호)의 규정에 의하여 “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·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”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02년 4월 22일  
산업자원부장관

**제1조 (목적)**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, 품질기준, 시험방법,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품질검사업무 위탁)** ① 법 제4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(이하 “위탁검사기관”이라 한다.)에 각각 위탁한다.

② 위탁검사기관간 관할업무 구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 (품질기준 및 시험방법)**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.

**제4조 (품질검사 제외)**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대상 중

다음 각호의 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.

1.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
2. 배관에 의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
3. 군납물량의 액화석유가스

**제5조 (품질시험장소)**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(이하 “지정검사기관”이라 한다.) 또는 위탁검사기관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지정검사기관 또는 위탁검사기관(이하 “검사기관”이라 한다.)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 (시료채취 및 보관)** ①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·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(이하 “검사의뢰자”라 한다.)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 이하

를 채취한다.

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,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(이하 “가스유통사업자”라 한다.)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 이하를 채취한다.

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 겨울용 완제품을 시료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. 다만, 지정 충전소가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1호 및 3호를 각각 시료채취하고 수검자로부터 프로판 혼합비율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.

**제7조 (품질시험 결과판정)** ① 검사기관은 품질시험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맞춤하여 판정한다.

② 제6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료채취한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결과에 수검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혼합비율을 계산하여 판정한다.

**제8조 (검사결과 통지 등)** ①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탁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이의시험)** ①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

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관중인 당해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시험을 실시한다.

③ 검사기관은 이의시험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, 최초의 시험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0조 (검사수수료)** ① 법 37조제2항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×0.027원/kg로 한다.

② 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(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,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.)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지정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지정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.

④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지정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검사비용 신청 등)**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위탁검사기관이 분기별 품질 검사실적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날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위탁검사기관이 신청한

품질검사 소요경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토록 조치한다.

**제12조 (기타사항)**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조정명령 폐지)** 산업자원부공고 제2001-138호(2001. 7. 4.)는 폐지한다.

**제3조 (품질검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)** 위탁검사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최초의 지정검사기관이 나올 때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, 위탁검사기관은 2003년 6월 30일까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·검사기관 인정을 받아야 한다.

### (별표)

#### 1.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

항 목	종 류	1호 (가정·상업용)	2호(자동차·캐비넷히터용)		3호
			여름용	겨울용	
조성 (mol%)	C <sub>3</sub> 탄화수소	90이상	10이하	15이상 35이하	-
	C <sub>4</sub> 탄화수소	-	85이상	60이상	85이상
	부타디엔	0.5이하			
황분(wt ppm)		100이하	200이하		200이하
증기압(40℃, MPa)		1.53이하	1.27이하		0.52이하
밀도(15℃, kg/m <sup>3</sup> )			500~620		
잔류물질(mg)			0.05이하		
동판부식(40℃, 1h)			1이하		
수분		합격		-	

1. C<sub>3</sub>탄화수소 : 탄소수 3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
2. C<sub>4</sub>탄화수소 : 탄소수 4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
3. 황분의 경우 부취제 첨가 후를 적용한다.
4. 겨울용의 경우 생산 및 수입단계는 11. 1~다음해 3. 31, 유통단계는 11. 1~다음해 4. 30까지 적용하고, 11월 및 4월중에는 여름용과 겨울용을 모두 적용한다.
5. 2호(자동차용 및 캐비넷히터용)중 이소부탄 30mol% 이상인 경우 겨울용 C<sub>3</sub> 탄화수소 혼합비율 하한을 5mol%로 한다.
6. 대형 승합차용, 산업용 및 공업원료용의 경우 C<sub>3</sub> 탄화수소와 C<sub>4</sub> 탄화수소 조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7. 제주지역은 2호, 겨울용의 위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으며, 기타 특수용도로 인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, 조정한다. ㉠

#### 2. 액화석유가스 시험방법

기준 항목	시 험 방 법
조성	한국산업규격 액화석유가스 KS M 2150, 미국재료시험협회 시험방법 ASTM D 2163 또는 국제표준화기구시험방법 ISO 7941에 의한다.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 2163에 의한다.
증기압	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KS M 2075 또는 KS M 2075-1에 의한다.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KS M 2075에 의한다.
증발잔류물	미국재료시험협회 시험방법 ASTM D 2158에 의한다.
황분	한국산업규격 액화석유가스 KS M 2150, 미국재료시험협회 시험방법인 ASTM D 4468, ASTM D 5504 또는 ASTM D 6228에 의한다.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KS M 2150의 미량전기량 적정식 산화법에 의한다.
밀도	한국산업규격 액화석유가스 KS M 2150 또는 시험방법 KS M 2075-1에 의한다.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KS M 2150에 의한다.
동판부식	한국산업규격 액화석유가스 KS M 2150에 의한다.
수분	미국재료시험협회 시험방법인 ASTM D 2713에 의한다.